

## 농촌회생 대책에 대한 건의안

의안 번호	
----------	--

제안년월일 : 2000. 12. 14

제안자 : 산업경제위원장

### 1. 주 문

농촌회생을 위하여 농가부채 해결방안, 농산물가격안정대책 및 유통  
질서 확립, 구제역피해지원대책, 수입농산물대책, 담배사업제조독점  
권 등에 우리의 입장을 표명함.

### 2. 제안 이유

- 정부의 농정실패로 농가부채 증가
- 고질적인 농산물유통문제에 따른 농산물가격 하락
- 구제역으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 증가
- 수입농산물 대량유통으로 인한 농가소득 하락
- 담배사업제조독점권 폐지로 인한 안정적 농가소득 붕괴

### 3. 참고 사항

“ 없 음 ”

## 농촌희생 대책에 대한 건의문

존경하는 대통령(국회의장, 새천년민주당대표최고위원, 한나라당총재, 자유민주연합총재권한대행,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장, 농림부장관)님께

세계속의 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농업인과 농촌의 어려운 현실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걱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나라의 기본이라는 우리의 농업은 정부의 농정실패로 인하여 누적되어 온 농가부채와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농산물 가격 그리고 수입개방에 의한 수입 농산물의 대량유통으로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150만 충북도민과 함께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은 우리 농촌의 어려운 현실과 농업인의 고통을 직시하고 우리의 마지막 생존 산업인 농업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여 농촌을 희생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농가부채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시행하기 바랍니다.**

정부의 정책이라면 누구보다 믿고 따르던 우리 농업인들은 정부의 잘못된 농정실패로 인하여 농가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농가소득

은 줄어들어 더 이상 농촌에서 살 수가 없어 도로를 막고 애써  
가꾼 농작물을 던져야 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농가부채특별법을 제정하여 피폐화되어 가는 농촌  
을 희생시켜야 합니다.

**둘째, 농축산물의 가격안정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농축산물의 가격폭락으로 자식처럼 소중하게 키워온 농작물을 하루  
아침에 갈아 엎거나 버려야 하는 고질적인 농축산물의 유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유통 부분의 투자를 과감히 늘리고 농축산물의 최  
저가격을 보장하여 정든 농촌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농축산물의  
가격안정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셋째, 구제역피해 축산농가의 지원대책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구제역 보호지역에 취해졌던 가축시장의 폐쇄, 가축 수송차량의  
소독 등 각종 규제는 풀렸지만 예방백신 접종을 받은 가축의 거래  
를 기피하여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거래가 안되  
는 가축에 대하여 정부가 전량 구매를 하거나 구매가 안될 경우  
적정 거래가격의 차액에 대한 보상 등 구제역피해 축산농가에 대하  
여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넷째, 수입농산물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WTO 선언이후 증가하는 수입농산물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미진할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유통환경속에서 수입농산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부족합니다.

수입농산물로 인한 피해농가에 대한 대책과 무분별한 수입업자들의 단속대책, 중국 보따리 무역에 대한 근본대책 수립, 농업을 무시하는 외교통상부의 자유무역협상 중지, 불법유통 농산물의 유통대책, 수입농산물 유통대책 및 수입 농산물을 구별할 수 있는 정부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담배사업제조 독점권을 폐지하려는 담배사업법의 개정을 즉각 중단하여야 합니다.**

현재 추진중인 담배사업제조 독점권의 폐지는 잎담배 전량수매 의무와 각종 경작지원 제도 등을 폐지하게 되어 농촌의 안정적인 소득작물인 잎담배의 생산기반을 붕괴시키고 결국에는 잎담배 농사를 포기하게 만들어 다른 작목의 과잉생산을 조장하는 것이나 담배사업제조 독점권을 폐지하려는 담배사업법의 개정을 막아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충청북도 농업인의 뜻을 모아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은 농업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농촌을 희생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2000. 12.

충청북도의회의원일동